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03. 8.

제출자 :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대상시설물과 경감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부담금의 면제 (안 제3조)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안 제4조)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 1제곱미터당 500원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 1제곱미터당 350원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안 제5조)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안 제6조)
 -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 별표 1
 -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 : 별표 2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 부담금 경감률은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안 제7조)
 -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
 -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안 제8조)
 - 시설물의 소유자가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매월 말일까지 제출
- 부담금경감신청 등 (안 제13조)
 -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제출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003. 7. 14 ~ 2003. 8. 2 (20일)

- 결 과 : 해당없음

9. 사전 협의사항

전남 도교 91100-2720(2002. 10. 21) 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준칙안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목포시 조례 호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호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

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3호에서 정한 사항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보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해 2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9.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시차 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11.“통근버스 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통근관리인”이란 교통량 감축방안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선

임된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에 의한다.

③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통근관리인 선임 등) ①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근관리인은 일상 근무시간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5·10부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1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2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 신청 및 심의) ①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2항의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방안별이행기준및경감비율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5 ※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 다만, 10·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70이상 징수 ※ 다만, 기업체, 단체 등의 소유차량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1시간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와 호텔이 2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포함)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함께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이상 20대미만 : 100분의 2 -20대이상 30대미만 : 100분의 3 -30대이상 40대미만 : 100분의 4 -40대이상 : 100분의 5
시차 출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간 차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퇴근 운영시: $\{(\text{총좌석수} \div \text{총종사자수}) \div 2\} \times 100$의 비율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text{총좌석수} \div \text{총종사자수}) \div 4\} \times 100$의 비율 단, 최대 30%까지 경감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시내 버스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등 지급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별표 2]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 타기 이행시 : 5%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이용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 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 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 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 평균 50인 이상 이용시 : 5%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시설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m ²)		
	소재지		(대표자)		
	주차장 규모	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종사자)	
감축방안	부제운행	10부제	시행방법:		
		5부제	시행방법:		
		2부제	시행방법:		
	주차장유료화	유료화	주차요금:	징수방법:	
		부분	주차요금:	징수방법:	
	승용차함께타기		함께타기 이행 차량대수 : 대		
	시차출근제		시차 출근시간 :	종사자 :	명
	통근버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운영시 (총좌석수: 총종사자수:)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총좌석수: 총종사자수:)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지급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인원: 명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함께 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승용차 함께 타기 월평균 이행 종사자수: 명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 월평균 이행 종사자수: 명 ◦ 통근버스 공동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근버스에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이용한 인원수: 명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 명 		
창의적 교통량감축내용					

목포시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근관리인 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시설 개 요	명 칭		면 적(m ²)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선 · 해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선·해임 일 자	
변 경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변경일자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
임·해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m ²)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 규 모	총 대	평면주차장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 사 자)
신청경감률		총 %		
산 출 기 초	구 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승용차 10부제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주차장 유료화		%	%
	승용차 함께타기		%	%
	시차 출근제		%	%
	통근버스 운영		%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창의적 교통량 감축		%	%

목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